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선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0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박선원·강준현·조 국

박홍배 · 김영배 · 이수진

신정훈 · 조정식 · 김병주

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 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, 취업심사대상 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 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「소득세법」 제21 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, 사업소득으로 근 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 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9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 중 "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"을 "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취업 및 업무취급제한	제19조의2(취업 및 업무취급제한
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) ① 국	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) ①
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	
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	
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	
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	
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	
접 확인하거나 국세청, 「국민	
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	
국민건강보험공단, 「국민연금	
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	
공단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	
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	
공단에 자료(국세청의 경우	
「소득세법」 제21조에 따른	제19조에 따른
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	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
한다)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	<u> 따른 기타소득</u>
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	
며,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	
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	
보고하여야 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